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자료			
	보도	2018. 7. 11.(수) 조간	배포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이명규 팀장(3145-8521), 장종현 선임(3145-8534)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단	지승구 팀장(405-5195), 김현승 선임(405-5208)

**제 목 :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이용한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시도!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소비자경보 2018-3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 경보 내용

- ①** 검찰을 사칭하는 자가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및 ‘가짜 공문’을 보여주며 자산보호를 위해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
 - ➔** 검찰·경찰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응하지 말 것!
- ②**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가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또는 www.boho.or.kr)에 신고!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정교하게 복제된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검찰총장 직인*까지 위조된 공문을 보여주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한다는,
 - * 위조된 공문은 現 검찰총장(문무일)이 아닌 前 검찰총장(김수남)의 직인이 날인
 - 다수의 제보가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2 구체적인 사기수법

- 서울중앙지검 검사임을 주장하는 성명불상인은 다수의 제보자들에게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되었으니 자산보호를 위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전달해줄 것”을 요구
 - 사기범은 제보자가 자신의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 수사공문을 보여 주겠다고 하며 가짜 홈페이지(<https://43.240.13.14>, 현재 차단됨, ☞<붙임1>)에 접속하여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도록 유도
 -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고 성명(XXX)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붙임2>) 하면 사건개요**와 함께 위조된 서울중앙지검 공문(☞<붙임3>)을 보여줌
 - * 주민등록번호란에 임의의 13자리 번호를 입력할 경우 접속되지 않으며, 동 사이트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까지 검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 위조된 공문화면(발체), “피의자는 2017.02.03경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일정한 금액을 받고 불법도박자금을 세탁하겠다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은뒤 XXX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송금받은 뒤 하나은행으로 재송금하여 편취함”
 - 제보자가 해당 사이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 대비하여 가짜 홈페이지내 다른 메뉴들을 클릭하면 실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의 해당 메뉴화면으로 접속되도록 설정

【 조치내용 】

- 금감원은 가짜로 의심된 동 사이트를 신속히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가짜임을 확인하고 차단*하였으나,
 - * 공공기관·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복제한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사기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7.1월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MOU를 체결하여 피싱사이트 차단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
 - 향후에도 사기범들이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사기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큼

<참고> 국내 피싱사이트 차단현황(한국인터넷진흥원) (단위 : 건)

구분	'16년	'17년	'18년 상반기
정부·공공기관	3,611	7,436	3,238
금융기관	14	102	19
기 타*	661	2,931	2,198
합 계	4,286	10,469	5,455

* 인터넷포털사이트, 간편결제서비스(○○페이) 등

3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금번 보이스피싱 시도에 이용된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는 일부 기능(나의 사건조회)까지 정교하게 복제되어 일반인이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 홈페이지의 진위여부 확인과 상관없이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 검찰(☎1301), 경찰(☎112), 금감원(☎1332)
- 또한, 정부기관·공공기관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를 발견하는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또는 www.boho.or.kr)에 신고

【실제 홈페이지와 가짜 홈페이지 구별방법(한국인터넷진흥원)】

- ◆ 홈페이지 주소창의 인터넷주소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는 방문하지 말 것
 - 일반적으로 정부기관 웹사이트는 “go.kr”, 공공기관은 “or.kr”로 끝나는 인터넷주소를 사용 ➡ (특히) 숫자로 된 주소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음
 - 금융회사 홈페이지는 주소창 색깔이 녹색이고 자물쇠 그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녹색·자물쇠가 없는 사이트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음
 - 실제 홈페이지는 수시로 관리되므로 최신 자료가 게시되어 있음 ➡ 과거 자료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노출되어 있는 사이트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1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틀린 그림 찾기

<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



< 실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




붙임2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나의 사건조회’

- 수사공문을 보여주겠다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
 - 실제 성명-주민등록번호 일치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 규칙만 검증하는 것으로 추정


[본문내용 바로가기](#)

[HOME](#)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마이페이지](#) [ENGLISH](#)

[법령용어검색](#)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처음 오셨나요?

사건조회

전자민원신청

범죄피해자지원

뉴스와 국민참여


[Home](#) > [회원](#) > [회원로그인](#)

회원관리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 공인인증안내

회원로그인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회원실명확인

비회원실명확인으로 로그인을 하시는 경우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여부를 반드시 체크 해 주십시오.

- 실명확인에 이용되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아래의 근거에 따라 수집 및 처리합니다.
- 관련근거 : 형사사법경찰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비회원 실명확인인 민원신청(예약 후 방문 발급)만 가능하며, 사건조회/법과금조회/민원신청(인터넷발급) 등은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시 모든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는 회원가입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아이핀 인증으로 가입한 회원은 사건조회/법과금조회/가납금환급조회 및 신청/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민원신청 및 제증명 발급 등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정보수정 화면에서 실명인증을 전환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로그인별 이용 가능한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보기](#)

○ 회원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회원가입하기](#)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비회원실명확인

이름

주민번호

실명확인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주민등록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문내용 비보가기

HOME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마이페이지 ENGLISH

법령용어검색



처음 오셨나요?

사건조회

전자민원신청

범죄피해지원

뉴스와 국민참여

사건조회

• 사건조회

- 사건조회 안내
- 경찰사건조회
- 검찰사건조회
- 법원사건검색

• 벌과금조회

- 벌과금납부 안내
- 벌과금납부명령서 전자발송
- 미납벌과금조회
- 벌과금납부내역조회

• 가납금환급조회/신청

- 가납금환급 및 신청 안내
- 가납금환급조회 및 신청
- 가납금환급내역조회

•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

- 재판서/통지서조회 안내
- 경찰통지서조회
- 검찰통지서조회
- 전자약식 약식명령등본 조회



국민과 함께 하는 형사사법
형사사법포털이 만들어 갑니다.

피의자는 2017.02.03경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일정한 금액을 받고 불법도박금을 세탁하겠다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은 뒤 []의 우편은행 가상계좌로 송금받은 뒤 의 하나은행으로 재송금하여 권취함.

서울 중앙 대검 2017년 조사 8005호 안205
(Prosecutors' office 2017 no.8005 research)

접수인: []
접수일자: 2017년 02월15일
발행일련번호: 서울 대검수사과 2017년 조사 8005호
급수: 특급
부록: 아래와같음

요지: 단속접수자 [] 조사 8005특별 사건.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www.sport**o.com)의 개설운영한 필리핀송척 이**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대포통장과 불법자금을 세탁한 정황을 확인 하였으며 개인정보유출 인터넷명킹 자금 세탁 등 문의사항이 있어 출석을 요구합니다.단속접수자는 용당 개인명의 도용침해신고접수를 받음과 동시에 계좌양도행의 거나 개인명의도용피해자라는것을 본인 스스로 해명을 해야합니다.

1. 행정법규 절차 14조2항에 근거하여, 대검수사과에서 행정집행사건을담당, 단속접수자를 통보하여 반드시 본인의 계좌자금 상종영,재산상황속은 기타 필요한 진술을 우선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본사건은 단속접수자관련돈세탁방지법사건, 단속접수자는 요지에 기록된 시간에 모든재산자료(포함한 토지, 주택, 예금, 투자, 입금 및 기타 소득) 및재산상황을 합법적인 재산임을 증명 감독받아야함.
3. 금융법 39조3항에 따라 합법절차에 따라본인은 계좌추적조회를 통해서 금융실명계의 원칙에 따라서 본인명의의 모든 합법적인 계좌에 대해 인적사항 자산이거나 모든부당한 거래내역을 조회를하여 투명성을 입증시켜야함.
4. 단속접수자는 집행명령이 발효된시간(여상)내에, 만일본사건의 조사,집행내용을 계삼자에게 전하였을 경우(계삼자 포함), 본 처에서는 금융법39조 17항 따라서 즉시 본인명의로된 재산자료(포함한 토지, 주택, 예금, 투자, 입금 및 기타 소득) 동결처리 하는 것입니다. 단속보호자는 다른 반대의견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 검 찰 문무일
(Prosecutors' Chancellor) Moon Moo Il

기안자 과장 대검찰청총장 문무일



2017 NO 8005

주관기관: 서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관계기관: 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
원본: 첨단범죄수사과1팀 사본 :
신청일자: 2017년 02월05일 비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30-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 http://www.moj.go.kr /비공개

상세 조회하기